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고주애¹

Ju-Ae Ko¹

(Received April 11, 2016 / Revised April 28, 2016 / Accepted April 29, 2016)

요 약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아동 주거빈곤, 주거정책

ABSTRACT

The government has switched the purpose of housing policy, from the 'housing supply' to 'housing welfare', with the Housing Laws established in 2015 under evaluation that resident stability and resident standard were improved. But, as 'affordable' housing is gradually decreasing,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come mor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basic element for the child safety, health, and better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a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had effect on the child, figured out the situation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and searched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ial policy of domestic and foreign chil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or resident environment of childhood has a bad effect on th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cademic achieve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cond, 1.29 million children (11.9%) are living in condition of housing poverty below minimum resident standard and a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Third, the policy on housing poverty of domestic child is almost absent and focuses on the elderly, young people. this study discussed political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results, as policy suggestions we proposed housing policy making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idence-based housing policy enforcement and, residential policy suggestion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as practical suggestions community working as the subject and related agency's solidarity from prevention activity of housing poverty and child advocacy point and we discussed way for issue and analyzed related laws, policies, commitments.

Key words : Child Housing Poverty, Housing Policy

1. 서 론

집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로 국가별 주거정책은 핵심 이슈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보급률 향상, 인구천 인당주택수 증가,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감소, 주거급여제도 도입 등의 결과로 국민의 주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수옥, 2015; 임세희, 2014). 그러나 현실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로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형태는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은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1년 5월 공고(제2011-490호)를 통해 최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교신저자: kojuae@childfund.or.kr)

저주거기준을 명시한 바 있다.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용도별 방의 개수와 최소주거면적을 제시하였으며 주택의 안전성 및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구건물로서의 구조강도와 재질,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를 비롯하여 법정기준에 적합한 환경요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피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주거복지 의무를 구체화 하고 2003년 주택법 보다 면적기준과 설비, 구조, 성능 기준이 다소 강화되었으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 주거수준 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준미달주거에 대한 제재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비한 한계를 갖고 있다(임세희, 2014).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낮은 기준 제시, 불명확한 법적 제재, 정부의 모호한 대응방안은 주거빈곤 가구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 가장 약자인 빈곤가정 아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아동의 주거빈곤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임세희, 201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 2013). 그러나 2016년 국토교통부의 주택계획은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노인가구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존의 주거급여, 주거지원 가구수 등을 일부 확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수입이 없거나 경제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구조적 한계로 빈곤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가족갈등의 증가,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을 초래한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된 196개국은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아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학대 피해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는 23.3%(2,333건)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과 주거환경, 아동학대가 모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우선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은 가구의 복지수준에 대한 사전적 평가로 보며 ‘빈곤(poverty)’은 사후적 평가로 본다(남원석, 2013). 본 연구에서는 한 가구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소득에 따른 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동 주거빈곤’을 다루고자 한다.

2015년 12월 23일 시행된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은 국민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에게 있어 주거권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거권을 옹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아동을 비롯한 지하옥탑거주 가구의 아동,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의 아동을 ‘주거빈곤 아동’으로 규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아동 주거정책과 해외의 아동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므로 한국의 아동 주거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거빈곤 관련 개념

2.1 주거취약계층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7년 6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 부터는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여관 등 거주자, 거리노숙인, 노숙인 쉼터·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를 비주택 거주가구로 규정하였다(남원석, 201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명시한 주거취약계층 대상을 범주화하여 정의하고 주거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거주형태를 바탕으로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은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거주자, 노숙인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구들을 포함한다.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부처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이행시 공통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2 주거빈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한 지역별 실태 및 복지 지표 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주택유형, 점유형태, 최저주거 미달 세 가지 지표로 주거빈곤을 설명하였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택유형 중 비거주용 건물, 판잣집, 기타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주거’라 명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 가구를 ‘주거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점유형태 미달가구는 주거유형 미달가구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무료 가구’도 빈곤층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최저주거 미달하는 가구도 이에 포함된다. 전국의 주택유형 주거빈곤층 1.17%, 점유형태 주거빈곤층 22.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5.2%로 보고하고 있다(노혜진 등, 2015).

2.3 주거약자

2012년 2월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2호)이 제정되면서 ‘주거약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지칭하여 주거취약계층 중 특정 대상을 명시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약자’는 인구사회학적 성격으로 개념화 하여 기존의 ‘주거취약계층’과 중복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6년 1월에는 일부 개정하여 지원주체를 기존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주거기본법과 같은 맥락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거빈곤과 아동 관련 연구 고찰

3.1 신체건강

국제적으로 주택은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기는 물건을 빨고, 배밀이로 기어 다니는 등 발달과정 상 특징이 나타난다. 점차 성장하면서 아동기의 호흡량과 물과 음식물 섭취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James & Kay, 2010). 이와 같은 아동기 특징을 고려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의 위생과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보고한 18개 유럽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과 건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냉난방의 적정성, 실내 공기의 질(습도, 곰팡이, 라돈, 해충), 소음, 안전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요소이다. 추위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며, 열악한 환기 시설과 습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균류를 빠르게 번식하게 한다(Harker, 2006). 지속적으로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등에 노출되는 것은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고 재발의 원인이 된다(Sharon et al., 2006). 곰팡이가 번식되면 카펫, 가구, 의류 등에 쉽게 확산되어 알레르기, 각종 감염, 유독물질 생성 등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홍인옥, 2002).

특히 과밀한 주거환경은 결핵,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관련 질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천식은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료되기도 하지만 성인기에 재발할 경우 비정상적인 폐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수막염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청각장애, 시각장애, 행동문제 등을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동기에 과밀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노인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Harker, 2006; Sharon et al., 2006).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물물이 오래되고 주거 면적이 작을수록 숨가쁨, 마른 기침, 비염 진단 등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지은 등, 2010).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명에도 위협을 준다.

3.2 정신건강

일반적으로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소음수준이 높은 환경은 사람에게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폭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Halpern, 1995; Kopec, 2010; Leventhal and Brooks-Gunn, 2003). 과밀한 주거에서 개인은 긴장, 불편함, 통제 불가능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또한 환기와 채광, 난방 또는 냉방이 원활하지 못한 주거에서는 불쾌감을 느낀다. 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사기저하, 우울, 소외감을 일으킬 수 있다(임세희, 2010).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울증, 과잉행동,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Harker, 2006). 임대주거는 낙인과 차별로 아동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와 임세희, 2008).

과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환경, 과도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거는 성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임세희, 2010). 부모의 주거불안에 대한 두려움은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을 약하게 만들며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 공포감은 아동에게 이어지게 된다. 특히 철거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공포감, 불안감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폭력 상황에 노출, 치안부재, 빈집이 많아짐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아동은 고립(Isolating), 폭행(Terrorizing), 무시(Ignoring), 타락시키기(Corrupting), 수치스럽게 하기(Degrading)에 노출된다. 특히 타락시키기(Corrupting)의 경우 사회화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비행을 강화하는 부정적 요소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홍현미라, 1997).

2009년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 보다 저소득층이 우울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유형이 임대아파트와 옥탑방의 경우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존감이 가장 낮았으며 주택의 소유 측면에서는 월세의 경우가 우울감이 가장 높고 자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숙과 박정아, 2012).

아동이 지하방, 여인숙, 모텔, 철거지역 등에 거주할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과증될 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방임, 정서학대, 성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보호자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로 표출되기도 하며 제3자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10,027건 중 학대행위자로 부모가 81.8%(8,207건)에 이르며 그 원인 중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이 20.4%(6,200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열악한 주거환경이 부모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학대도 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아동

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빈곤에 따른 집세와 공과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우울감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국민일보, 2014.4.15).

3.3 학업성취 및 정신발달

주거환경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는 신체·정서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이 주된 과업인 시기이다. 아동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소음이 심한 환경은 아동의 신체의 청력 기능과 함께 정신건강의 집중력, 인지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pec, 2010).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은 보호자의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과밀한 주택에 사는 어머니의 경우 영아의 요구와 행동에 덜 반응하며 과밀하지 않은 주택에 사는 어머니에 비해 풍부하고 정교한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Gagne & Ferrer, 2006). 또한 대대적으로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수학 성적이 낮음을 연구결과에서 설명하고 있다(Lubell & Brennan, 2007).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빈곤주거 아동은 비빈곤 주거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와 임세희, 2008). 기존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알려진 사교육비, 소득빈곤, 아동의 자존감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최저기준미달 주거환경은 학업성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세희, 2010).

4. 한국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

4.1 한국 아동의 객관적 주거빈곤 현황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다. 가구 상황을 살펴보면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15.7%(일반아동 2.8%), 지하층 19.1%(일반아동 2.2%), 월세 43.5%(일반아동 15.8%)에 이르렀다. 가장 오래된 건축연도는 15~20년으로 28.4%(일반아동 10~15년 22.0%)의 주거빈곤 아동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아동들의 부모세대인 30~40대 월세평균 비율은 21.5%(전세 21.7%)로 2000년 14.8%(전세 28.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중졸(22.6%), 고졸(15.1%), 4년제 대졸(5.2%)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미혼(33.8%), 이혼(24.3%), 사별(19.3%), 유배우(10.1%) 순으로 나타났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 2013). 아동의 주거빈곤이 가구주의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의 주거빈곤 비율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각각 서울(19.7%), 서울 금천구(31.9%),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69.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아동 주거빈곤 비율은 서울특별시(19.7%), 인천광역시(13.5%), 제주특별자치도(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주거빈곤 비율 상위 읍면동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69.4%)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64.7%),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61.0%) 순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 2013).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표 1. 아동 주거빈곤 비율 상위 읍면동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율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6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64.7%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61.0%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56.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53.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52.9%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2.8%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52.4%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5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2동	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	50.1%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0.0%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50.0%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유형 주거빈곤층은 경북(2.61%), 서울(2.37%), 전남(2.16%), 점유형태 주거빈곤층은 대전(31.3%), 제주(30.7%), 세종시(26.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경북(13.0%), 전북·서울(7.1%), 경남(6.7%)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노혜진 등, 2015). 전국의 일반 주거빈곤과 아동 주거빈곤은 지역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한국 아동의 주관적 주거빈곤 현황

2013년 「아동의 삶에 관한 종합지수 개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 영역(주거 과밀, 거주 지역사회 안전, 아동의 방과후 방치율, 사회적 자본, 거주지 불안정)에 있어 경북, 서울, 충남, 전북, 경기, 대구, 충북 순으로 아동들은 자신이 안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봉주 등, 2013).

2015년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따르면 전국 아동과 부모 7,337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 중 ‘버거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울산, 광주, 강원 순으로 불안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응답한 과밀한 주거지 즉 방의 개수가 성인 2인당 1개, 아동 2인당 1개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충북, 전남, 강원 순으로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부모 중 5.1%가 가구구성원 수에 맞는 적절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이봉주 등, 2015). 아동과 부모의 객관적 주거빈곤과 주관적 주거빈곤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5. 주거빈곤 아동을 위한 정책적 탐색

5.1 주거정책 탐색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1988년 이전까지는 공급목표 중심으로 수립되어 주택건설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와 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정비에 주력하였다. 이후 주거복지정책은 점차 공공 임대주택 공급사업, 매입·전세임대사업,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기타사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우정연, 2015).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거기본법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의 양’에서 주거생활의 질’로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를 공고함으로 주거복지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김기원, 2016).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함에 따라 지역 간 재정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주거복지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고된 지표수준은 선진국 수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국가적 책임성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와 1인당 주거면적 증가로 주거의 질적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에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5%(2012년)에서 47.5%(2014년)로 3%p 하락하고, 임차가구(무상제외) 중 월세가구(보충부 월세 포함)는 50.5%(2012년)에서 55.0%(2014년)로 4.5%p 증가한 점,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2012년 19.8%에 비해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혜승과 유미경, 2015).

국가별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네델란드 32%, 프랑스 19%, 영국 17.1%, 일본 6.1%에 비해 한국은 4.8%로 OECD 국가 평균 11.5%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하성규 등,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공급량이 부족하고, 입주할 경우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경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대료 보조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급자에게만 제공되고, 지원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는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주거빈곤 가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을 통해 주거지원비를 일부 지원 받고 있다. 후원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원된 금액은 주택개보수비, 주택보증금, 난방비, 관리비 등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저소득가구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용한 경험은 6.77%에 불과하며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0.97%, 저소득층 월세 지원 이용경험은 0.42%,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도 1.47%로 낮다(우정연, 2015).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공공에 의한 주택개량 지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량자금과 같은 용자와 자가 소유자에 대한 현물급여형태의 집수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집수리 사업 중에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수량과 금액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며 도시가구, 세입자가구 등은 제외되어 있다.

저소득가구 중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상의 배려는 없는 반면 노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2호)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달리 아동에 대한 별도의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5.2 선거공약 탐색

선거를 앞둔 후보자나 정당은 현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운 정책 공약은 유권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며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국민, 아동을 위한 선거공약과 투표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MPP지표(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를 활용하여 2014년 6.4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정책 영역 분류 중 보호권의 안전, 발달권의 보육, 인프라 구축의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치중된 반면 아동관련 법·제도 개선과 아동정책 예산 공약은 다소 부족하였고, 참여권인 인권 교육과 인권 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없었으며 두 지역의 시도당선자는 아동정책을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김유리 등, 201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6년 2월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겨레21>이 분석한 아동 공약 이행 결과에 따르면 현재(2016.03.23) 활동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2명 미제출)은 모두 8,481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중 아동정책 공약은 1,031개에 불과하였다. 이 중 국회의원 26명은 아동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1,031개 공약 가운데 이행한 공약은 224개(이행률 21.7%)에 불과하다. 이 중 아동 발달권 영역에서는 학교 재건축, 잔디구장 조성 등 시설 개선 공약, 명문고·국제고 유치 등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86.3%)을 차지하였다. 취약계층과 관련한 공약은 9개(1.7%)에 불과하였고 주거빈곤과 관련된 선거공약은 없다(박수진, 2016).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이 제시한 주거정책 공약 대상은 청년, 노인은 있지만 아동은 없다. 새누리당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단지 건립 방안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투자해 조성된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방안을, 정의당은 임대 공영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소득 하위 20% 이하 세대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것을 공약하였다(고주애, 201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정당 및 후보자들은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이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주거환경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아동 친화적 주거제도 국제적 시각

6.1 아동권리 준수를 위한 국제적 약속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1).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비준하였으며 가입국은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갖고 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즉 아동의 4대 권리는 아동정책 영역분석에 있어 대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김유리 등, 2015).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00년 최초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개발협력 목표에 대한 약속으로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빈곤 중심의 문제를 2002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8개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MDGs가 실행된 이후 최빈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MDGs의 목표 기간이 끝나면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는 기존의 MDGs가 유엔 내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목표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에만 국한된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목표수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MDGs의 한계를 보완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달성할 주제로 삼고 있다. SDGs는 만드는 과정에서 회원 국가들의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이 약속에 합의하였다. 유엔 모든 회원국은 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엔은 그동안 국가별 자발적 이행사항을 보고받았던 방법과 달리 각국의 보고를 권고하며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SDGs 11번 항목의 목표는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해야 한다’로 세부 목표에서는 ‘아동’을 명시하여 안전성, 포용성, 접근성 등을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취약한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가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주애, 2016).

6.2 아동 친화적 주거정책 및 제도

1989년 유엔이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자 1996년 유엔 회의에서는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가 최초로 발의되었다. CFC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아동의 생활환경현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후보로 등록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국제기준의 10가지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수립할 때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랑스 솔레(Cholet)시의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 영국 뉴캐슬(Newcastle)의 아동들이 작성한 아동권리헌장, 스페인 사비냐니고(Sabinanigo)의 어린이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예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탈리아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설립된 이후 전 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0여개국 1,300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 두 지역이다(<http://childfriendlycities.kr>).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고 있는 원칙과 아동권리 중심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선진국은 아동발달상의 특징과 취약점을 고려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13045인 『아동 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Risk and Safety Risks)』에 의해 국가적인 관심을 갖았고, 1999년 의회가 주도한 『건강한 집을 위한 프로그램(Healthy Homes Initiative: HHI)』을 통해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주택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였다. 영국은 2004년 주택법(Housing Act 2004)을 강화하면서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평가 체계(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 HHSRS)』를 갖추었고, 특히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를 별도로 명시하여 안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2006).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슬림화 될 가능성, 낙인화 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또래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빈곤가구가 특정 지역으로 밀집되는 지역분화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MTO(Moving to Opportunity for Housing Demonstration) 주거정책은 빈곤가구가 직접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김미숙 등, 2013). 미국의 SHF(The Connection, Inc's Supportive Housing for Families)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동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며 노숙 또는 최저기준 미달주거, 임시주거, 불안정한 주거에 있는 가정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여 아동이 위탁가정에 보내지 않고 원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http://www.theconnection.org/SHF.html>).

주거빈곤 아동의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살만한 집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7. 결론

7.1 정책적 제안

아동옹호(Child Advocacy) 활동의 열매는 정책의 변화이다. 아동복지의 두 중심의 축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사업,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부차원의 개입은 각각 1999년,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관련법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책임 하에 정책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아동을 보호의 우산 아래 있게 한다.

아동복지의 바람직한 형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돌봄, 학습지원 등을 전제로 하는데 이와 같은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사유로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가정입양을 통해 아동을 보호한다. 이 때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높은 사회적 비용지출이 과제로 남게 된다.

아동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가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 편의 하에 아동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청년, 노인, 장애인에 비해 아동은 소외되고 있다.

이제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주택지원 특히 가정해체의 우려가 높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제법의 위상을 갖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의사존중과 참여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주요 원칙은 가장 먼저 임대주택 제공 기준에 있어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빈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대상이며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이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주택 정책을 일반 주택지역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 배치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에 있어 성인 2명 방 1개, 자녀 2명 방 1개로 되어있는 것을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 자녀 2명은 각 방 1개로 조정되어야 한다. 위탁가정의 아동 배치규

정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주거빈곤율은 높으나 실제 주거정책에서 아동은 배제되어 있다. 또한 아동 주거빈곤 지역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후보자들이 내세운 아동공약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없고, 학교 재건축, 잔디구장 조성, 명문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유치 등 선심성 공약에 치우치고 있다. 정책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립해야 한다. 투표권이 없는 국민인 아동, 특히 빈곤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공약수립과 성숙한 투표, 공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가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 조사자료, 국내외 선행연구, 해외 우수 정책사례 등 객관적인 현황을 토대로 가장 취약한 대상, 이용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정책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정책은 중앙정부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국방, 외교와 마찬가지로 주택, 교육,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주거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두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관리비를 내고 있어 빈곤계층 입주자의 경우 관리비 부담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 관리비를 차등하여 낼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난방비도 별도로 보조되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 보완 해야 할 것이다.

7.2 실천적 제안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성숙한 아동 주거빈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아동 주거빈곤 정책마련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주거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해야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원칙과 목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아동의 권리가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엘로 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하의상달식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보행권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설명회, 조사, 투표, 워크숍, 제작 과정을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을 아동, 교사,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둘째,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아동복지기관, 학계, 분야별 전문가 등이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대하여 이슈화 해야 한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 관계자들은 일반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옹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2015년 조사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전국 비교 결과와 <한겨레21>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한 2014년 6.4 지방자치단체장 및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아동을 위한 공약분석 결과는 아동을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갈 중요한 증거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특정 NGO 뿐만 아니라 아동 관계단체들이 연대하여 이슈화 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신욱(2013),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보건복지포럼』, 56-63.
2. 고주애(2016), “주거정책에 아동을 담자.”,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 20: 138-141.
3. 고주애(2015), “아동 주거빈곤 현황과 정책 제안”, 『제4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391-404.
4. 국민일보(2014), 「아동학대와 동반자살(2014.4.15)」.
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6. 국토교통부(2016),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보도자료, 2016. 1.26)」.
7. 김기원(2016),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 가능”, 『복지저널』, 제90호: 54-59.
8. 김미숙 등(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유리, 고주애, 정익중(2015), “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학교사회복지』, 31: 333-355.
10. 김혜순, 유미경(2015),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11. 남원석(2013),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47-71.
12. 노혜진 등(2015), 「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 지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박수진(2016), “소외된 아동 공약”, 『한겨레21』, 1105(2016.4.4).
1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15.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16. 우경연(2015),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7. 이봉주 등(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18. 이봉주 등(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19. 이봉주, 임세희(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한국 복지패널 심층분석(4)」, 43~50.
 20. 이수옥(2015), “저성장시대의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제4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16~35.
 21.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임세희(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215~244.
 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도시연구소(2013), 「어린이재단 아동 주거빈곤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4. 최병숙, 박정아(2012),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5): 75~86.
 25. 최지은, 전정윤, 최유림(2010), “주거특성과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1~165.
 26.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27. 하성규 등(2012), 「한국 주거복지 정책」.
 28. 홍인옥(2002),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연구」.
 29. 홍현미라(1997), “철거지역 아동 환경의 위험상황에 대한 고찰 및 아동방임, 심리적 부당대우에 대한 실태보고와 대안 모색”, 「도시와 빈곤」, 28.
 30. Gagne, L. G. and A. Ferrer (2006), “Housing, Neighborhoods and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ren in Canada”, *Canadian Public Policy*, 32(3): 275~300.
 31. Halpern, D. (1995), *Introduction and Background. Mental health and the Built Environment*, Oxon: Taylor & Francis, Inc.
 32. James, B. and S. S. Kay (2010), *Children's Housing Futures, Center for Housing Research, Aotearoa, New Zealand*.
 33. Kpoc, D. (2010), *Environmental Psychology for Desig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34. Leventhal, T. and J. Brooks-Gunn (2003), “Moving to Opportunity: an Experimental Study of Neighborhood Effects on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76~1582.
 35. Lubell, J. and M. Brennan (2007), *Framing the Issues: the Positive Impacts of Affordable Housing on Education, Center for Housing Policy. Washington DC. Housing Affects Child Well-being*, Funder's Network.
 36. Sharon, V., E. C. Hair, C. Theokas, K. Cleaveland, M. McNamara and A. Atienza (2006), *How Housing Affects Child Well-being*, Funder's Network.
 37. WHO (2007), *LARES: Large Analysis and Review of European Housing and Health Status Preliminary Overview*,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38. <http://childfriendlycities.kr>.
 39. <http://www.theconnection.org/SHF.html>.